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932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09. 6. 30
제안자 : 도시관리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2008년 11월 18일 나재암 의원 외 14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1월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702번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과 2009년 5월 15일 김덕배 의원 외 10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5월 2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878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중 “문화 및 집회시설”인 공연장·집회장에 대한 규모제한을 현행 2천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,
-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중 “문화 및 집회시설”인 공연장·집회장 가운데 음식점, 마권장외발매소, 마권전화투표소를 제외한 용도의 건축물은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면적제한을 두지 않기

로 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의 입지를 활성화하고,

- 「임대주택법」 개정조문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중 “문화 및 집회시설”인 공연장·집회장에 대한 규모제한을 현행 2천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28조제3항제2호 가목)
- 나.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중 “문화 및 집회시설”인 공연장·집회장 가운데 예식장, 마권장의 발매소, 마권전화투표소를 제외한 용도의 건축물은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면적제한을 두지 않기로 함. (안 제29조제2호 가목)
- 다. 「임대주택법」 개정조문에 맞게 인용조문을 개정함. (안 제55조제14항)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3항제2호 가목중 “한한다.”를 “한한다. 다만,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29조제2호 가목중 “한한다.”를 “한한다. 다만, 예식장, 마권장외발매소, 마권전화투표소를 제외한 용도의 건축물은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)”로 한다.

제55조제14항 중 “제12조제1항”을 “제16조제1항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함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</u></p> <p>제28조(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①~②(생략)</p> <p>③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별표 5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별표 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</p> <p>1.(생략)</p> <p>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</p> <p>가. 공연장·집회장(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)</p> <p>나.(생략)</p> <p>3.~15.(생략)</p> <p>제29조(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별표 6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별표 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</p> <p>1.(생략)</p>	<p><u>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</u></p> <p>제28조(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①~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.(현행과 같음)</p> <p>2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가. 공연장·집회장(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. 다만,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)</p> <p>나.(현행과 같음)</p> <p>3.~15.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9조(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.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</p> <p>가. 공연장·집회장(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<u>한한다</u>)</p> <p>나.(생략)</p> <p>3.~16.(생략)</p> <p>제55조(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) ①~⑬(생략)</p> <p>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(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. <u>다만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0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.</u></p>	<p>2.</p> <p>가. 공연장·집회장(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<u>한한다. 다만, <u>예식장, 마권장의 발매소, 마권전화투표소를 제외한 용도의 건축물은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</u></u>)</p> <p>나.(현행과 같음)</p> <p>3.~16.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5조(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) ①~⑬(현행과 같음)</p> <p>⑭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<u>제16조제1항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<u>(단서 삭제)</u></p>